

---

# 범죄 피해자의 초상권보호 개선방안

## Protective Way Improvement of a Crime Victim's Rights of Portrait

---

전찬희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Chan-Hui Joen(4599632@hanmail.net)

---

### 요약

전통적 형사법체계에서 범죄피해자는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간과되고 말았다. '잊혀진 존재' 또는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 하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자학의 연구과제는 형사법체계에서 범죄 피해자가 인격적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헨티히(Hans Von Hemtig)가 1948년 피해자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지 23년이 지난 후이며 최근에 와서 '범죄피해자 구조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등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제한적 범죄 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권리 구제와 보호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보호 개념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현행 구제 제도를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 중심어 : |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

### Abstract

Became large a problem we were productive movement of information became large and occurring to diffusions of development of public media and Internet use.

While the Internet became a generalization, public media had more influences and risks, and a crime to abuse anonymity became large in cyber space.

In addition, damage is becoming expanded reproduction that infringe of 'crime victim's rights of portrait'.

The point that is most important in order to improve these points is recognition regarding the special situation of crime victim, and the ethic consciousness and independent operation regulation and regulation system that these point was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public media and Internet operation that are an information producer is necessary, and Internet portal shall be included like Internet newspapers to the arbitration object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lso, a legal system regarding personal responsibility shall have for protection of a crime victim's rights of portrait by personal information activity for protection in cyber space. Suggest to a portrait of a crime victim, and an individual and social rights security effort are required for activation regarding an infringement relief system.

■ keyword : | Crime Victim's Rights of Portrait |

## I. 서론

전통적 형사법체계에서 범죄피해자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간과되고 말았다. ‘잊혀진 존재’(Vergessene Figur)[1] 또는 ‘주변적 존재’(Randfigur)에 불과 하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자학의 연구 과제는 형사법체계에서 범죄피해자가 인격적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헨티히(Hans von Hentig)가 1948년 피해자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지 23년이 지난 후이며[2],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과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진술권’을 범죄피해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1987년 11월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92년 피해자학회가 설립되고,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5년 12월 「범죄피해자보호법」,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 개정 시 범죄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기까지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 계속되어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제한적 범위 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피해자 권리 구제와 보호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범죄피해자가 범죄로부터 입는 일차적 피해 외에 범죄피해자가 대중에게 노출되어 입는 이차적 피해에 대한 구제에 대한 논의와 제도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신문 · 잡지 등 인쇄언론매체는 “읽는” 매체로부터 “보는” 매체로 변화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TV 방송의 정보전달 역시 직접 현장의 영상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인터넷과 디지털카메라와 같은 개인 멀티미디어 장비가 보편화되면서 기존에 대중매체가 제공한 사진과 영상을 재유포하는 단계에서 개인이 직접 제작한 이미지와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노출됨으로써 야기되는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는 과거와 달리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다.

대중매체가 지니는 막강한 영향력과 그에 따른 위협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면서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정간법과 방송법 등에 분리되어 규정하고 있던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한데 모으고 인격권 보호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범죄피해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보호로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보호 개념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현행 구제제도를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한다.

## II.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보호의 개념

### 1. 범죄피해자의 개념

#### (1) 피해의 개념

피해자학에서는 ‘피해’ 또는 ‘피해자’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피해 개념에 대한 논의는 ‘피해’에 대하여 범죄를 포함한 위법행위의 피해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이 사회적 생활관계에서 입는 모든 피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3]. 국내에서는 피해자학의 대상을 범죄피해자에 한정하는 것이 주된 견해이다[4].

피해는 원칙적으로 각국의 실정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 또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받은 육체적 · 정신적 · 감정적 고통이나 상처 그리고 경제적 손실 등을 의미한다[5].

#### (2) 피해자의 개념

‘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의 귀속 주체를 말하며,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도 포함한다. 보호법익의 주체뿐만 아니라 행위 객체나 범죄수단이 된 자도 포함될 수 있지만, 범죄로 인한 직접피해자로 제한되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해를 입은 범죄도

개인적 법익에 한하지 않고 국가적 ·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도 포함한다는 견해가 있다[6].

그러나 형사소송법(제223조, 제225조)와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2조 제5호)에서 범죄에 있어 직접피해를 입은 자만을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간접적 피해자도 '피해자'의 개념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는 간접적인 피해자에게도 심각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역시 범죄 피해자의 개념에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의 배우자, 친계친족 및 형제자매와 같은 간접적 피해자도 포함시키고 있으며[7], 또한 미국의 경우도 '피해자'의 개념을 정의할 때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자도 '피해자'로 보고 있다[8].

### (3) 피해자화[9] 과정

#### 1) 1차 피해자화

'피해자화'라는 용어는 1969년 미국 대통령위원회 보고서 「자유사회에서 범죄도전」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그 후 미연방 법무부에 설치된 「법집행과 사법행정에 관한 위원회」에 의하여 실시되었던 피해자화 실태조사를 통하여 일반화되었다[10].

이것은 일정한 원인으로부터 범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범죄화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범죄피해도 일정한 원인에 기하여 그로부터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발생하게 된다는 가설에 기초한 것이다.

1차 피해자화는 개인이나 집단이 범죄 또는 위법행위 등에 의해 직접 피해를 당하는 과정을 말한다. 1차 피해는 크게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로 나눌 수 있다. 신체적 피해는 주로 폭력범죄에서 나타나는데,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은 물론 치료나 재활 이후에도 영구적인 신체손상과 불구에 이를 수 있다. 경제적 피해는 재물 손괴, 금전이나 물품의 피해, 신체적 부상에 의한 소득 감소, 의료비 지출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정신적 피해는 외상후정신장애, 범죄피해로 인한 스트레스성 정신질환 등으로 매우 심각한 경우도 있다.

#### 2) 2차 피해자화

범죄자에 대한 제재 또는 피해 회복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가 주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판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사의 심문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추궁 당하여, 그 결과 범죄피해자가 비밀로 하는 사항이 밝혀져 가족과 대인관계가 파탄을 맞게 된다는지, 피고인 측 증인이 피해자의 인격이 손상되는 증언을 하거나 판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해자와 범죄자가 같이 비난받는 경우이다. 이처럼 범죄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 사회적으로 피해 입는 것을 2차 피해자화라고 한다.

#### 3) 3차 피해자화

3차 피해자화는 1차, 2차 피해자화를 통하여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가중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범죄피해자에게 범죄가 자신이 부주의했던 탓이라고 비난 받거나, 주변인들에게 사건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배척받는 경우에 범죄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처받아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반대로 원망과 복수심으로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3차 피해자화는 피해자의 성격 또는 주변인의 의식, 피해의 경중에 따라 다르나, 이전의 단계의 피해를 가중한다는 점과 범죄피해자의 피해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범죄피해자 초상권이 언론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해 침해될 경우가 이 단계에 해당된다.

## 2. 초상권의 개념

### (1) 초상권

일반적으로 초상(portrait)의 넓은 의미로는 특정인의 사진이나 그림은 물론 성명, 음성, 서명 등 그 특정인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구체적 의미로는 사람의 모양이나 형태를 그림이나 사진 또는 영상으로 제작한 것만을 뜻한다. 즉, 초상권이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초상을 촬영, 공표, 영리적 이용을 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초상권은 원래 그림이나 조각으로 제작된 초상만을 문제로 삼아 왔으나 19세기 후반 사진 기술의 발달과

조판 인쇄술이 발명되어 사진의 대량 복사가 가능해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 해졌다[11].

초상권은 초창기 자연법사상에서 개인의 생래적 권리로 받아드려지면서 발전한 인격권이 파생된 권리로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경제적 원칙에 따라 각 개인마다 초상권의 객체들이 이에 대한 불법적 사용으로 인해 다른 법률적 주체들에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재산권적 권리로 주장되기 시작했다[12].

독일에서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1906년 무단으로 개인을 촬영하여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초상에 대한 법을 규정하였고, 미국 뉴욕 주에서는 1903년에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13]이 제정되었다.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초상권은 법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는 데, 자신의 초상에 대한 권리는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와 무단공표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 할 권리, 그리고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로 나누어진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진을 촬영하고 공표하는 것은 초상권에 저촉되지만 미디어 보도에 있어 첫째, 그 사진이 공적에 관련된 사실일 것, 둘째,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것, 셋째, 사진촬영이나 그 수단방법이 위 보도목적에 비추어 그 필요성과 상당한 이유를 가질 때에는 면책사유가 된다[14].

## (2)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초상권은 크게 인격권적인 것과 재산권적인 성질을 갖는 것으로 구별된다. 인격권적인면은 허락 없이 개인의 초상이 촬영 공표 당함으로써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법적으로 하고 있다.

인격권에 대한 권리개념은 원래 재산권을 기초로 한 소유권 등의 물권과 채권 중심의 개념이었다. 그리고 인격적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받으려면 개별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였다. 주로 그러한 것으로서는 생명 · 신체 · 자유 · 명예 등이 해당되었으나, 산업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사회의 등장으로 인격적 가치의 다양한 측면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

다. 개인의 초상권이 인격권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 역시 이 범주에 드는 것으로서 정보사회로 인한 초상권에 대한 침해는 개인권리의 보호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 사람은 자신의 초상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관련되는 명예나 프라이버시 등의 인격적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격권의 하나로서 초상권을 갖게 된다.

## III.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침해의 특징

### 1. 특정인에 대한 피해의 집중

일반기업의 상품의 경우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이나, 대중매체를 통한 피해자는 그 속성상 일정한 개인에 집중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유해물질을 넣은 식료품의 경우 그 피해에 노출되는 것은 그 상품을 구매한 불특정의 대중이며, 이러한 경우 우리는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상품에 대한 빠른 처리를 요구한다. 즉, 상품의 회수 · 피해에 대한 배상 · 해당제품의 제조의 금지 · 유해물 투입에 대한 처벌 등 피해를 줄이고 그러한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또한, 제도적인 처분 외에도 최근의 식료품의 유해물질 사건에서 보듯이, 유해물질이 발견된 해당제품을 생산한 제조사의 전제품에 대한 불구매운동 등과 같은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미디어의 속성상 피해의 대상은 사회적 약자나 공인으로 집중된다. 정보전달이라는 순수한 목적 외에 대중매체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켜 해당 대중매체의 판매를 증대하려는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사회적 인식이 높은 공인에 대한 정보가 노출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대항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보를 취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터넷을 통한 개인적 미디어 공유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다만, 기존의 대중매체가 경제적 목적을 기반 한 것이라면, 인터넷의 개인적 미디어 공유는 그 개인의 인기 또는 공명심을 기반 한 것이라고 본다.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침해에서도 이러한 미디어의 속성은 사회적 인식이 높은 연예인 · 스포츠 스타 · 정치인과 같은 공인과 여성 · 빈곤자 · 무학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피해에 대상이 되었을 경우 잘 나타난다. 결국 대중의 이목을 끌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는 자극적인 정보를 필요하게 되고, 사회적 윤리관이나 대중매체 스스로의 윤리강령, 취재준칙은 그러한 면에서 간과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노출[15]이나 공인이란 이유로 범죄피해에 있어서도 완전 노출되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뉴스에서 보듯이,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침해의 대상은 일정한 개인에 집중되는 것이다.

## 2. 피해에 대한 감수

범죄피해자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 이러한 피해를 피해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감수해버린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공인의 경우 대중시민에 비하여 언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일정 부분 감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반 시민의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중재신청이나 소송 등 대항할 마음을 갖지만, 공인의 경우 설사 피해를 입어도 대항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범죄피해자로 노출된 공인은 현재 보도 또는 공유를 통해 정신적 · 심리적 피해를 입더라도 향후 공인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대항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특히, 유력언론에 대한 충성의 신호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 대중시민의 경우에도 피해에 대한 감수의 경향이 보이는데, 한국 언론 재단에서 실시한 언론수용자에 대한 의식조사결과(2006) 언론으로 피해를 본 사람 중 66.7%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에 대처하지 않는 이유는 피해구제에 대한 불신, 구제제도에 대한 불평, 신분노출의 두려움이 원인이었다[16].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도 초상권이 침해당하더라도 대중매체의 사회적 우월함으로 인한 더 큰 피해에 대한 두려움, 피해 구제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평, 그리고 범죄피해자 스스로 사회로부터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감정 등을 원인으로 하여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 3. 피해의 확대재생산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의 특성은 예방적 제도가 없거나, 침해당한 최초의 시기에 적절한 처리를 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확대재생산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미디어의 속성과 비가역적(非可逆的) 성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즉, 미디어의 속성상 일정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뉴스가 일정 대중매체를 통해 공표되면, 대부분의 대중매체 역시 사회적 분위기에 동참하거나, 대중매체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견지에서 동조와 모방을 하게 된다.

대중매체의 상품가치를 위해 차별성은 존재하지만 그 차별성은 일정한 사회적 기초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정 신문이 범죄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보도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대중매체들도 그러한 뉴스를 보도하게 된다. 과거의 경우 특종이라는 독과점적인 시점이 존재하였지만 현대 정보화 사회에 있어 그러한 시간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점에서 대중매체의 차별성의 확보인데, 각각의 대중매체는 상품가치를 갖기 위해 동일 뉴스에 대해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러한 차별화는 결국 자극성과 선정성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17]. 이것은 침해되는 최초의 시기에 보호하지 못한다면, 공표되는 대중매체의 수는 순식간에 늘게 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선정적이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더욱 가중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이러한 피해의 확산과 가중은 미디어의 비가역적 성격을 통해 더욱 심각해진다. 기존의 대중매체의 경우에도 대중이 정보를 수용함에 있어 그 공간의 제한이 거의 없다고 할 것이나, 인터넷의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정보의 공간적 한계는 없게 되었다. 결국 대중은 그 요구를 충족해주는 정보를 국가와 지역의 제한이 없이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일어난 고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을 기존의 대중매체를 통해 한국의 대중은 거의 동시간에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정보는 사상자의 숫자, 미국에서 제공한 현장의 영상, 피의자의 신상 또는 검거여부 등 한정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의 정보 수용자가 원한다면, 인터넷을 통해 무한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

면, 인터넷을 통해 사건학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이름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이름을 통해 개인 블로그와 홈페이지 등을 검색하여 접속하고, 몇 번의 반복을 통해 사건의 희생자 즉, 범죄피해자의 신상 뿐만 아니라 아주 개인적인 점까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터넷의 정보 공유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피해자가 대중에 노출되어 입는 2차적 피해를 보호하려면 피해가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는 막아야 할 것이다.

#### 4. 피해계량화의 곤란

재산범죄의 경우 침해받는 법익의 계량화는 비교적 단순하나, 범죄피해자의 초상권의 침해의 경우 피해의 계량화가 곤란하다. 침해의 피해가 심리적 · 정신적인 인격적 피해이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하여 범죄피해자가 단순한 공표의 철회 또는 정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배상을 원하는 경우에 위자료의 금전적인 환가, 피해에 대한 처벌정도의 문제가 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 연예인이 종종 거액의 위자료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다분히 자신의 가치를 높게 인지되게 하려는 심리가 있거나, 경제적인 초상권 문제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 정신적 피해의 배상은 심리치료 또는 정신과치료가 보편화 되면서, 그 치료의 기간과 치료에 쓰이는 금전적 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한 배상이 적절할 것이다.

### IV. 현행 보호방안 및 구제수단의 검토

#### 1. 범죄피해자의 인격권 보호

범죄피해자의 생명 · 신체 · 자유 · 명예 · 사생활의 보호 등과 같은 인격권 보호는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18]. 범죄피해로 인하여 한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는 경우 국가로 하여금 사회적 ·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범죄피해자인 국민 각자가 기본적인 생존권적 측면에서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범죄피해자의 초상권을 보호하는 법률은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19]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20]를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6월 형사소송법 개정시 법률조항의 신설을 통하여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 ·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보호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94조 3 제1항)

실제 범죄피해자가 인격권적 초상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를 이용할 수 있다. 명예에 관한 죄는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형법은 단순명예훼손죄(제307조 1항), 허위사실명예훼손죄(307조 제2항), 자자명예훼손죄(제308조), 단순출판물명예훼손죄(제309조 제1항), 허위사실출판물명예훼손죄(제309조 제2항) 및 모욕죄(제311조)를 규정하고 있다.

#### 2. 언론중재법을 통한 구제수단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 · 중재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그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초상권의 침해를 구제하는 수단으로 언론중재법은 다양한 구제방법들을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사실적 주장 내지 사실 보도만을 언론보도로 보고 있으며[21], 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사후적인 피해 구제의 방법으로 ① 정정보도청구권, ② 반론보도청구권, ③ 추후보도청구권, ④ 손해배상청구권의 4가지가 있으며, 사전적인 피해예방의 방법으로 ① 침해정지청구권, ② 침해예방청구권, 그리고 이를 위한 ③ 물건의 폐기청구권 등이 인정되고 있다.



할 수 없으나, 선연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일 뿐, 초상권에 있어 구체적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으로는 볼 수 없다.

일본의 경우 보도기관 각 사는 보도윤리 규정을 설정하고 기본적 인권의 옹호에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초상권 보호에 있어 '요미우리신문'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게재 가능한 사진의 경우, 첫째, 초상권을 포기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둘째, 일반에게 알려지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합치되는 경우, 셋째, 사회적으로 큰 관심거리인 경우, 넷째, 전부터 세간에 널리 알려진 사건, 다섯째, 정치가,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이다. 한편 게재하기 어려운 경우로는, 첫째, 부녀자 폭행사건의 경우 본인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경우, 둘째, 길을 가는 여성의 모습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한 인물에 대한 클로즈업 사진의 경우, 셋째, 기형아 및 특이체질을 가진 사람의 사진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가 없는 경우, 넷째, 지체부자유자 및 정박아 등의 사진에서 정면사진, 다섯째, 살인이나 교통사고 등에서 시체의 사진은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물론 요미우리신문의 기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초상권 보호를 위한 조건을 찾을 수 없으나, 구체적 사안에서 자발적인 보도윤리 규정을 마련했다는 것을 우리의 경우와 비교할 점이라고 본다.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대중매체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의 대중매체가 윤리강령 또는 실천요강을 제정할 시, 선연적인 원칙이 아닌 구체적으로 유형별 사건에 대한 적절한 초상권 보호원칙을 세워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반대중보다 엄격한 초상권 보호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대중매체의 침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옴부즈맨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옴부즈맨(ombudsman)이란 대중매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규범적 요구를 배경으로 탄생한 자율 규제 장치 중 하나로 스웨덴에서 최초로 실시되었다. 스웨덴은 1810년 '의회 옴부즈맨'을 시작으로 1969년 신문매체의 옴부즈맨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후 미국 등 각국에서 신문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독자인 대중이 신문의 직무와 책무이행을 감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각 언론기관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22]. 즉, 이미 이용하고 있는 옴부즈맨제도에 범죄 피해자의 침해에 대한 방지목적을 첨가하여 과거에 행해졌던 침해사례를 연구하고, 현재의 침해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2)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포털[23]

최근 언론중재법의 개정으로 인터넷 신문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과 관련하여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13건에 대한 조정신청이 접수된 바 있다[24]. 즉, 범죄피해자가 초상권을 인터넷 신문을 통해 침해받았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인터넷 신문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대중매체인 인터넷 신문이 사회적으로 신뢰받고, 윤리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중매체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한 윤리의식이 더욱 중요하다.

인터넷 문화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인터넷 신문은 사회적 영향력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적인 보도활동은 타인이나 타 기관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 인터넷 신문의 보도활동은 이와는 역행하는 면이 없지 않다. 보도활동에서 인터넷 신문기자에 대한 직무윤리는 기존의 대중매체에서보다는 덜 중요시되어 인터넷 신문의 오보 또는 흥미와 이목 끌기 기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인터넷 신문을 살펴보면 가십(gossip) 정도의 기사나 대중매체로서의 공익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기사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사가 대중에게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를 언론중재위원회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신문기사의 경우, 독자가 해당기사의 제목을 클릭해야만 기사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독자를 끌고자 기사는 기사의 내용과는 무관한 유인용 기사제목을 기재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연예인의 급작스런 사망기사제목으로 기사를 기재하였는데 실제 기사내용은 연예인



이 출연한 드라마에서 죽는 연기를 했다는 것으로, 인터넷 신문의 많은 독자들이 제목만으로 해당 연예인이 실제로 사망했다고 믿었고,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 결국 사망소식이 그 연예인의 주변에까지 이르러 신문과 방송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다고 밝히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인터넷 신문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댓글에서도 나타나는데, 기사에 대한 일반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순기능적인 점을 간과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기사의 대상에 대한 악의적 댓글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점에 대해서는 개인적 측면의 개선방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인터넷 신문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범죄피해자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문은 기사에 대한 직무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대중매체와 같은 윤리강령 또는 직무규정을 제정하고 자발적인 규제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신문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대상으로 포함 된 것과 달리 인터넷포털에 대한 논의는 아직 계속되고 있다. 최근 네이버(naver)나 다음(daum)과 같은 인터넷 포털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07년 상반기 인터넷 정보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7년 6월 현재 만 6세 이상의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5.5%이며, 이용자 수는 3,44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대중들이 뉴스를 접하는 매체로 기존의 신문이나 TV 보다는 인터넷 포털의 뉴스제공이나 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문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다[25]. 즉, 인터넷 포털에서 범죄피해자의 신상과 사진, 영상 등 인격권적 초상권이 공표되어 입는 피해의 심각성과 과급력은 기존의 대중매체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경우, 블로그 · 미니 홈페이지와 같은 개인 인터넷 공간과 인터넷 카페 · 인터넷 동호회와 같은 집단의 인터넷 공간을 운영하는 주체로 단순히 기사의 제공하는 유통창구가 아니라 정보의 생산→재생산→확산을 반복하는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 포털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은 보면, 2007년 5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수희 의원이 주최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임덕기 연구원은 정보를 연계하는 인터넷 포털에서 이루어지는 법의침해 사례의 문제점의 원인을 체계적인 법제도의 불비로 꼽으면서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관리와 규제를 위한 입법방안을 주장하였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2007년 정책제안서에서 인터넷 포털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첫째, 포털 뉴스로 인한 피해자가 기사를 삭제하도록 요청한 경우 포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이를 즉시 보고하고, 둘째, 언론중재위원회가 뉴스 기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게시중지 등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셋째,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식절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고 뉴스 기사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하면 기사 삭제 또는 정정을 결정하고 이를 해당 언론사와 포털에 통보하고, 넷째, 언론사는 포털에게 기사에 대한 삭제 및 정정 보도 요청을 하고 정정된 기사는 재송고하도록 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제안하였다.

현재 우리 사법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의 경우 명예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인터넷 포털이 운영하는 영역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삭제요청, 불법 커뮤니티 활동의 정지 등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을 말한다.

인터넷 포털의 문제점과 현재까지 논의된 방안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격권적 초상권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 인터넷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입법을 통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규제제도와 예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포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적어도 언론중재법의 중재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중재과정에서 게재중지 등의 임시처치를 적법하게 따를 경우 인터넷 포털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포털의 자율적 규제에 있어서, 하루에도 수없

이 밀려드는 정보의 진위여부와 피해여부를 파악하여 조치하는 책임을 인터넷 포털 업체에만 지우는 것은 물리적, 시간적으로 현실상 불가능 하므로 인터넷 이용자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신고하여 인터넷 포털업체가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나, 인터넷 포털이 제공할 개인 또는 커뮤니티공간에 개인적으로 게재하는 정보에 있어 사전에 그 정보의 문제여부를 인터넷 포털 업체에 문의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인터넷 포털을 이용하는 대중에게 올바른 정보공유나 피해가 되는 공유유형을 숙지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대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개인적 측면

### (1) 정보의 생산 및 공유자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와 더불어 현대 정보화 사회에 있어 일반 대중의 역할은 단순한 정보의 수용자가 아닌,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제공된 정보를 직접 또는 가공을 통해 재생산하거나,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개인용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는 역할로 바뀌고 있다. 대중이 정보의 생산과 이동에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대중매체는 물론 인터넷 공간의 정보량과 이동량은 급속히 증가되고, 사회전체의 정보기반이 발전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대중의 참여활동이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이라는 순기능적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폐악을 낳고 있다. '도덕적 해이'라고 까지 부르는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대상을 구별하지 않고 피해를 주고 있으며, 악성비방 · 대상이 원하지 않은 정보의 공개 · 허위사실의 유포 등 사이버범죄에까지 이르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인권권적 초상권 침해에서도 이러한 개인의 정보의 생산과 공유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현실이다. 일차적으로 대중매체에 노출된 범죄피해자의 사진 · 영상 등의 신상정보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인들에 의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그 피해역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차적으로 단순히 정보의 확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유과정을 통해 개인들이 생산한 정보 · 공유된 정보에 대한 가공 등이 합해지면서, 원

래의 정보와는 다른 방향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최근 악성루머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모 연예인 사건을 살펴보다라도, 수사당국은 루머의 근원인 소위 '짜라시'라고 부르는 증권시장 정보지가 문제라고 보았으나, 사실상 자살까지 이르게 만든 정신적 · 심리적 피해는 그 루머를 확산시키고 악화시킨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 모 연예인이 사채를 하고 있다는 루머는 동료 연예인의 장례식에서 오열하는 보도사진과 영상이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지고,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더욱 악화되었다. 그리고 보도사진과 개인들의 정보(개인들이 수집한 풍문, 직접 찍은 일상생활 등)들이 합해지면서 결국 사실이 아닌 사실로 견디지 못할 상황이 된 것이다.

현재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정보활동으로 인해 폐해가 반복되는 상황이며, 무제한적으로 주어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를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는 결국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주장으로 이어졌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사회와 학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 더구나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정보활동으로 인한 범죄피해자의 초상권이 침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그 대상이 범죄피해자라는 특수한 상황을 인식하고,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용자 책임에 대한 법적 · 제도적 방안이 있어야 한다.

### (2) 초상권 침해의 피해자

개인의 초상권은 본질적으로 보도의 자유와 상충 내지 상보적 조화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개인의 권리 측면에서 보면 권리의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언제라도 범죄의 피해 대상과 초상권 침해의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른다는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범죄피해자의 초상권은 언론기관의 자율규제와 사회적 제도보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범죄피해자 스스로가 권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기존 구제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과 불신은 범죄피해자의 초상권을 보호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것이다. 언론피해구제의 경우 신청인은 피해보상을 받기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피신청인에게 대응해야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을 보더라도 범죄피해자 자신의 초상권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권리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침해구제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인의 노력과 함께 사회단체와 같은 수용자 단체와의 연계된 권리확보 노력도 필요하다.

## VI. 결론

대중매체의 발달과 인터넷 사용의 보급화로 정보의 생산과 이동은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발생하는 폐해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대중매체가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과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인터넷과 같은 가상공간에서 더욱 확대되며, 일부 가상공간에서의 개인의 정보의 생산과 공유는 익명성을 악용하는 범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침해는 공인과 사회적 약자와 같은 특정한 대상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즉 개인이나 집단이 범죄 또는 위법행위 등에 의해서 직접피해를 당하는 과정과 범죄자에 대한 제재 또는 피해 회복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가 주어지는 것 외에 피해자에게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국 범죄피해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는 문제를 낳는다.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보호에 있어, 언론중재법과 피해자보호 법률의 보완과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인 바탕을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인 예방방안과 구제수단의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범죄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며, 정보생산자인 대중매체와 인터넷 운영에서도 이러한 점이 고려된 윤의식과 자율적 운영규정과 규제제도가 필요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에 인터넷신문과 같이 인터넷 포털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

한,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정보활동으로 인한 범죄피해자의 초상권을 보호를 위해서 개인 책임에 대한 법적·제도적 방안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침해구제제도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개인과 사회의 권리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한 범죄피해자가 무분별하게 대중매체와 인터넷에 노출되어 피해가 가중되는 불합리를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 참고문헌

- [1] 김재민, 「범죄피해자대책론」, 진리탐구, p.24, 2006.
- [2] 오재환, “피해자학의 위치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2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28, 1991.
- [3] Mendelsohn은 1975년 국제피해자학회연구회 특별강연에서 에너지, 산업, 천재지변 등 모든 피해에 대해 앞으로 피해자학의 연구주제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諸澤英道, “國際被害者學研究會”, 「シコロスト」, 595號, 有斐閣, 1975, 86-89面.)
- [4] 민건식, “피해자학이란 무엇인가”, 「피해자학연구」, 창간호, 한국피해자학회, pp.15-21, 1992.
- [5] 지광준, 「현재사회와 피해자」, 더센, p.34, 2006.
- [6] 이재상, “피해자의 소송법상 지위”, 「고시연구」, pp.8-33, 1988.
- [7] 간접피해자의 범주에는 범죄피해방지와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포함된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2항)
- [8] M. Peggy, Tobolowsky, *Crime Victim Rights and Remedies*, Carolina Academic Press, p.14, 2001.
- [9] W. Kiehl and S. Lamnek, *Soziologie des Opfers Theone : Methoden und Empirie der Viktimologie*, W. Fink, S. 272ff, 1986.

- [10] 宮澤浩一, “被害者學の現況”, 「被害者學研究」, 創刊號, 日本被害者學會, 3, 26-27面, 1992.
- [11] 안상운,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의 문제”, 한국 TV카메라기자회, 「한국카메라기자회보」, 1996.
- [12] 박종렬, “보도와 광고에서 초상권의 법적문제”, 「입법조사연구」 통권 제254호, 1998(12).
- [13] 한 소녀의 초상을 제분회사가 광고 포스터에 동의 없이 사용하고 상업적으로 상용한 로버슨 사건에서 기인하였다. (맹원순, 매스커뮤니케이션 법제이론, 법문사, p.228, 1984.)
- [14] 한위수, “법관이 본 사법관련보도의 문제점과 제언”, 언론중재, p.20, 1994.
- [15]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현황에서 보면 1981년부터 2005년까지 개인적 법외 침해 유형 중 성폭력피해자의 신원공개를 이유로 시정권고를 받은 사건이 총 708건으로 전체 권고건수의 14.8%에 달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시정권고사항으로 따지면 총 1690건 중 41.9%에 해당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연도별시정권고현황 2006.)
- [16] 한국언론재단, “언론수용자에 대한 의식조사결과”, p.183, 2006.
- [17] 한국언론재단의 2004년 조사를 보면, 일반인 38%, 언론인 42.5%가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의 가장 큰 원인을 언론사간 지나친 특종경쟁으로 꼽았다. (한국언론재단, 2004년 조사자료, p.250, 2004.)
- [18] 헌법재판소, 「헌재판례집」, 제7권 2집, 헌법재판소, p.1, 1996.
- [19] 제8조(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특정 강력범죄중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다만, 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 강력 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 또는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지 못한다. 다만, 피해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 제21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0.27>
- [21] 언론중재법 제2조 제14호
- [22] 박영상, “유투즈맨 제도의 실태”-영국 제도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1998.
- [23] 포털사이트란 이미 구축된 인터넷 네트워크의 접속을 전제로 하여 이용자를 모집하여 부가 가치를 발생시키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의미하여, 현재 국내 포털 사이트 시장은 검색 업체인 야후, 네이버, 다음 등이 선두업체로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엠파스, 파란 등의 후속업체와 하나포스, 메가패스 등 인터넷망 제공업체들이 포털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경쟁적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
- [24]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통계참조  
(<http://www.pac.or.kr>)
- [25] 한국광고주 협회가 성인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문의 구독률은 2001년 51.3%에서 2006년 34.8%, 지상파 방송 3사의 저

년 메인뉴스 시청률은 2004년 19.6%에서 2006년 15.5%로 떨어졌다.(한국광고주협회, 대중매체실태조사, 2006.)

### 저자 소개

전 찬 희(Chan-Hui Jeon)

정회원



- 1995년 6월 : 청주대학교 법학 박사
- 2008년 12월 : 중앙 경찰학교 외래교수
- 2008년 12월 : 배재대학교 외래교수

<관심분야> : 공법(헌법, 환경 분야와 기본권, 행정법, 행정 절차법)